

함께 꿈꾸는 마포,  교육문화도시로 가자!

민간위탁 보고서

2018. 1.

기획경제국

연번	부서	재위탁/ 재계약	사업명	현수탁기관	개별 법령	개별 조례	위탁 기간	예산(현년도)
1	일자리 경제과	재위탁	마포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	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		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년	100백만원 (구비)

※ 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

- ‘재위탁’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- ‘재계약’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부서명	팀명	담당자	전화번호
일자리경제과	지역경제팀	장유정	8574

1. 위탁 목적

- 1)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정보 및 경영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필요
- 2) 예비 및 신규 창업자들을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경영, 기술, 설비 등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

2. 위탁 내용

가. 사업내용: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 위탁(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 지원사업 포함)

※ 시설물 유지관리 제외

나. 위탁기간: 2018. 1. 1. ~ 2019. 12. 31.(2년)

다. 위탁시설명: 마포비즈니스센터

라. 수탁자명: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

마. 추진경과

- 1)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: 2017. 11. 10. ~ 11. 23.
- 2) 선정 심사: 2017. 12. 11.
- 3) 심사결과 발표: 2017. 12. 14.
- 4) 협약 체결: 2017. 12. 29.

바. 관계법령

<지방자치법>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.
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타. 중소기업의 육성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,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3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

가. 예 산 : 100백만원/년(구비)

나. 산출내역 :

(단위:원)

비목	세부내역		산출내역	총액	지원금액
인건비	본봉	총괄매니저	2,166,134원*12개월	25,993,600	60,570,000
		행정매니저	2,126,300원*12개월	25,515,600	
	보험료		본봉*10%	4,860,800	
	퇴직금		2,100,000*2명	4,200,000	
입주기업 지원사업비 (직접비)	마포투자로드쇼(Ⅰ,Ⅱ)		2회*전문가 3인	1,600,000	22,600,000
	단기 IR 스쿨		강사비:20만원*2시간*8회	3,200,000	
	기술교류회		40만원*2회	800,000	
	창업문제해결데이		130만원*5개월	6,500,000	
	중소기업 시책설명회		30만원*1회	300,000	
	입주기업 교류회	체육대회	50만원*1회	500,000	
		간담회	50만원*3회	1,500,000	
		만담의장	100만원*1회	1,000,000	
	입주기업 지원비	사업화지원	50만원*12개기업	6,000,000	
	운영위원회	운영위원	2회*10만원*3명	600,000	
외부전문가		2회*10만원*2명	400,000		
운영비		2회*10만원	200,000		
센터운영비 (간접비)	일반 수용비	렌탈료	복사기:27.5만원*12개월 정수기:5만원*12개월	3,900,000	16,830,000
		소모품비	11만원*3회	330,000	
		우편료	2만원*10개월	200,000	
		기업안내판	10만원*3회	300,000	
		공증비	25만원*2회	500,000	
		통신비	17.5만원*12개월	2,100,000	
		시설개선비	125만원*2회	2,500,000	
		홍보비	20만원*10개월	2,000,000	
		사무실운영비	10만원*3개월	300,000	
		복리후생비	2만원*10개월	200,000	
	업무추진비	회의비	10만원*4회	400,000	
	교육훈련비	교육	30만원*4회	1,200,000	
	여비	교통비	5만원*8회	400,000	
	협회비	KOBIA	150만원*1회	1,500,000	
		매니저협회	100만원*1회	1,000,000	
합계				100,000,000	100,000,000